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I)

최 상 수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I. 서 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가 내부적으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과목구분과 설정, 참고자료가 있다.(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것인데, 전년도 7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세입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과목은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정통계를 가능케하여 국가와 지방간 통합재정수지 등 공공부분의 재정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참고자료는 『중앙부처의 주요시책』,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국가의 예산편성기준』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다.

따라서 지방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은 예산을 기능과 성질 및 경비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전국통일성 유지와 재정운영상황의 분석 및 재정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며 예산집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서의 전산프로그램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있어 능률성의 향상과 인력의 절감 등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예산편성결과와 집계·분석이 용이하며 국가 예산과의 연계 및 정책의 대안 강구 등 여러 부문에서 기여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예산과목구분과의 설정에서의 성격, 예산과목의 구조, 그간의 과목변천 상황, 과목구분의 분류, 과목구분의 주요내용과 회신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II. 예산과목구분과 설정 개요

1995년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는 1920년대에 소개된 품목별 예산과 점증주의를 기초로 하는 예산제도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1950년대에는 점증주의와 품목별예산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의 성과에 대한 측정 및 분석에 초점을 두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소개되었고, 1960년대에는 투자사업에 대한 기능적 분류 및 다년도 계획을 근거로 투자사업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와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예산제도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1970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점에서 기존 및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비용을 재평가·분석하여 투자사업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ZBB)가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과 점증주의를 기초로 한 전통적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그동안 소개되었던 성과주의예산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등을 조금씩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호 불가분 관계에 있는 예산제도와 과목구조의 관계에서 볼 때, 예산제도가 통제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과목구조도 기능별보다는 조직별로 편성하게 되어 예산집행의 책임한계를 엄격히 규제하게 된다.

1. 법적근거와 성격

가. 법적근거

1) 지방재정법 제32조(예산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1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장·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나. 법적성격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에 있어 『국가와 지방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와 『회계책임 명확』 및 『재정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유지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재정진단·분석』등의 재정관리체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며 지방예산의 체계와 특성,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분석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달하는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령에 위배된다.

2. 예산과목의 구조

가. 세입예산구조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수입인 지방교

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시·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 등으로 구성된다.

나. 세출예산구조

세출예산과목에서 장·관·항은 예산의 기능과 조직에 따른 분류로서 예산의 목적과 기능, 즉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목구조라 할 수 있다. 세항은 조직별 분류로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투자성질을 구분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정보를 제공하며, 목구조는 예산편성·집행한계를 정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3. 그간의 변천상황

가. 1995년도 이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재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인 장·관, 조직별 분류(국·과·계 단위)인 항·세항·세세항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목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국 가	기능별	기능별	부처단위	국 단 위	성질별
지 방	기능별	국단위	과 단 위	과 또는 계단위	계단위

※ 국가의 경우는 세세항에 성질별 분류방법을 가미하여 기본적 경비와 사업비를 구분하고 있음

1995년도 이전의 지방예산 과목구조분류의 문제점은 과목구조가 지나치게 조직별로 되어 있어 예산집행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예산통제가 용이한 장점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전산화작업이 곤란하다. 과목분류체계가 국·과·계단위로 되어 있어 전산

화를 하여도 부서단위로만 파악됨으로써 전산화의 실익이 없게 되어 있다.

둘째, 각종 재정계획수립과 재정분석시 예산담당 실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재분류하여야 하므로 자료의 신뢰도가 없으며, 이중작업으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편성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분석작업이 병행되지 못하고 단순통계작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중기지방재정 계획·가용재원판단·재정진단 등의 작업시 객관적 분석기준이 없어 지방재정의 흐름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실과 조기정착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셋째, 과목구조가 조직별로 분류되어 있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혼합편성됨에 따라 단체장의 재원판단을 어렵게 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지역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였다.

넷째, 다양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상 국가와 분류체계를 동일하게는 할 수 없으나 장·관·항의 기능별 분류까지도 상이하여 통합재정 분석을 어렵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섯째, 예산집행의 경직성이다. 조직별 분류는 책임한계와 분류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탄력성이 없고,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되는 등 예산집행이 경직화되었다.

나. 199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의 『재정지원』(지방채, 재산매각수입, 보조금사용잔액, 기부금 및 기금수입, 부담금)을 세외수입에 통폐합하여 세분화된 과목구조를 단순화하였다. 즉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된다.

세출예산은 종전의 경산예산과 자본예산이 혼합 편성되어 예산의 편성과 심의가 곤란한 것을 명확히 했으며, 또한 부서별(국·과·계)단위로 분류되어 국가예산과의 비교분석시 애로가 있던 것을 기능별·성질별 분류체계의 국가와 일치시켰고 지침으로 편성기준을 관리하는 기준경비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장 · 관	—	기능별 분류 : 5개장 16개관	
항	—	행정기관별 분류 : 31개항	
세 항	—	자치단체별 행정조직별 분류 : 132개 세항	
세세항	〔	대분류(4) :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소분류(16):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 경상예산
		국고보조(경상, 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신규, 계속)	〕 사업예산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 상환	〕 채무상환
		예 비 비 기 타	〕 예비비등
목	—	성질별 분류 : 35개목	
세 목	—	내용별 분류 : 77개세목	

1) 과목구조 개편 기본방향

1996년에는 종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목구조를 개편하였으며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예산·사업예산·채무상환·예비비 등으로 분류하여 경비의 성질별 분석체계를 정비하였다.

둘째, 기능별·성질별 분류체계는 국가체계와 맞추어 통합재정 수지분석이 가능토록하여 공공부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셋째, 성질별 분류방법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각종 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넷째, 지방재정여건은 취약한 반면 자칫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준을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경비로 별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다.

2) 과목별 주요 개편내용

1996년에 개편한 장·관, 세세항, 목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관 구조개편

장·관의 구조는 공공단체의 주요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국민 또는 주민에게 공공부문의 투자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과목이며 의회의 동의없이 상호 이용하지 못하는 입법과목으로서 1995년도에 8개장과 26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5개 기능의 장과 16개 기능의 관으로 개편하여 국가편제와 가급적 통일을 기하였다.

구 분	세 입		세 출	
	'95	'96	'95	'96
장	7	7	8	5
관	13	11	26	16
항	35	26	49	31
세 항	-	-	153	129
세 세 항	-	-	311	16개유형
목	79	68	44	34

과목구조를 개편한 기대효과로서는 과목구분의 단순화·명료화로 심의 및 주민이해의 용이, 경상예산의 독립으로 경상예산 증가억제 효과, 전산처리의 가능 및 재정분석에 유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나) 세세항 구조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와 활동 등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하여 종래에는 세입부문에 의해 재정능력을 평가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세출부문의 지출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세출구조의

대변혁으로 지방재정의 통계가 신뢰성 있게 개선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누고 대분류에는 경상예산·사업예산·채무상환·예비비 등 4개 단위로 구분하였다.

(1) 경상예산

경상예산에는 공무원인건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기준을 정하여 주는 기준성 경비 그리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인 일반운영비, 기타 업무추진에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로 한정하고 경직성 경비의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여 절감예산을 투자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업예산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함으로써 재원주체를 명확히 하고 투자사업 규모와 흐름을 명료하게 하는 한편 자체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 예산중 지출부문의 가처분 재원을 알 수 있게 하고 세입부문의 재정자립도와 세출부문의 가용재원 구성비율을 함께 분석할 수 있게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파악과 분석이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도 경상적 국고보조사업과 사업적 국고보조사업을 구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질별 분석도 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의 경우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자치단체별 순수 자체신규사업 규모를 알 수 있게 하였다.

(3) 채무상환

채무상환은 국내차입상환과 해외차관상환으로 분류하고 국내 차입상환을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상환으로 구분하였다. 종래에는 채무부담행위상환은 해당사업예산으로 분류되어 투자비로 관리되었으나 개편된 내용에는 채무부담행위상환액을 채무상환에 포함함으로써 자치단체별 총채무상환액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세입부문의 차입액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액과 상환액을 공제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흑자 또는 적자 예산편성 상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 중 채무상환액의 구성비를 파악함으로써 채무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세세항 구조>

[현 행] - 계단위

2126 법무관리	1. 법제및송무관리	2. 소송사무처리
2131 통계전산 운 영	1. 통계관리	2. 행정자료실운영
	3. 전산운영	4. 장비및자료관리

[개 편]



대 분 류	소 분 류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 120 기준경비 130 관서운영비 140 경상적 경비
200 사업예산	210 국고보조(경상)사업 220 국고보조(사업)사업 230 지방양여금사업 240 시·도비보조사업(시·도의 경우 불요) 250 자체(신규)사업 260 자체(계속)사업
300 채무상환	310 지방채(국내)상환 320 채무부담행위 상환 330 기타(국내)상환 340 차관(해외)상환
400 예비비 등	410 예비비 420 기 타

(4) 예비비 등

예비비등으로는 예비비와 반환금·잡손금·조상충용충당금으로 분류하였다.

나) 목구조 개편

목구조는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투자방향을 알 수 있게 하고 예산집행의 기준이

되는 최소단위로서 집행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종래의 목구조는 성질별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 분류하고 44개 비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96년 과목구조 개편시는 종래의 44개 비목을 36개비목으로 줄여 8개의 유사한 비목은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을 탄력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과목구조 개편이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1996년도의 과목구조개편은 종래의 전통적인 품목별예산제도와 점증주의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성과주의예산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영기준(ZBB)예산제도가 가미된 것을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에 부분적으로 자본예산제도의 장점을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제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갖게 되었다.

첫째,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에 유익하다. 사업예산은 자본형성과 개발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당연히 1년이 아닌 수년에 걸친 장기성을 띠게 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재정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예산이 단년도 편성주의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편성하게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불경기를 극복하는데 지방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사업투자의 폭을 늘리는 유인책이 되게 함으로써 사업예산은 경제성이 있는 자본적 사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효수요를 유발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소득원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건전재정의 운용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함으로써 경직성 경비의 경상예산 증가율을 사전에 방지하여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양토록 하였다.

넷째, 종래에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등이 혼용됨으로써 구분이 어려워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심의에 혼돈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과목구조개편으로 이같은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고 분석 및 평가가 보다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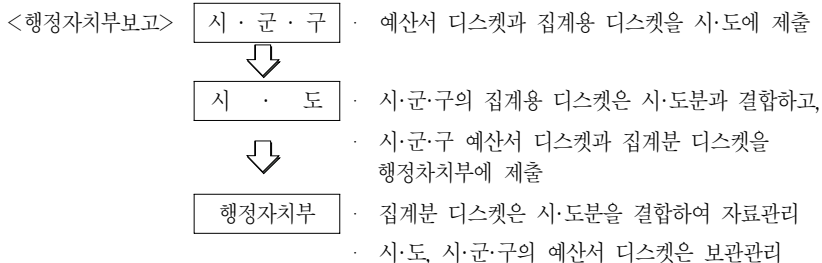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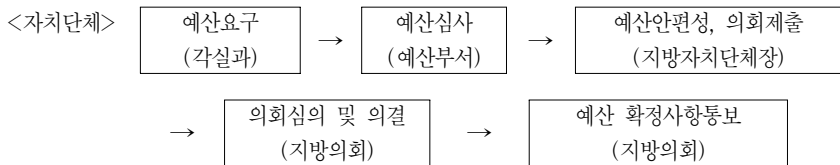
다섯째, 지역주민이 지방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행정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주민에게 이해되기 쉽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의 효과도 손쉽게 파악되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과목구조개편은 주민에게 지방재정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상성과 자본성, 소비성과 투자성, 일반예산과 채무상환예산을 기준으로 한 재정지출의 구분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아 유권자인 주민의 자기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제고하는 데도 큰 역할하게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예산편성상황 전산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전국적인 예산편성 결과의 집계·분석이 용이하고 국가예산과의 연계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왔다.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제출 등의 일체의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게 하여 예산편성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각 자치단체의 예산편성내용을 중앙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준경비 편성상황을 확인하며 재정분석과 통계작업을 전산화함으로써 시간과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디스켓관리 등 자료관리가 용이하였다.

전산체계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 1997년도

○ '97년도의 세입·세출 과목구조는 '96년도부터 개선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단체가 조직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탄력성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예산과목구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단위중심의 과목체계인 “세항”을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과목구조를 일반회계의 과목구조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여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간에 연계성 확보와 예산편성과 운영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97년도에는 경상경비도 중전의 예산편성지침에 여비·수용비 등 40여개 비목별로 예산편성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던 것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비인 7개 경비에 한정하여 예산편성지침으로 지출상한선을 제시하고
 ※ 공무원 관련경비·기관운영비, 의회운영경비 등
- 그외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예산과목구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과목중 조직과 관련된 과목구조인 세항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도록 위임했다.

그리고 예산서에 전년도 비교분을 삭제하는 등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에 구애 없이 투자심사분석 및 우선순위 등에 의해 실제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므로써 지방예산의 편성에 있어 전례 답습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을 개선하여 재원배분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출과목구조>

장 · 관	—	기능별 분류 : 5개장 16개관	
항	—	행정기관별 분류 : 39개항	
세 항	—	자치단체별 행정조직별 분류 : 자율설정	
세세항	—	대 분 류(4) :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	소분류(11) : 인 건 비	
		관서운영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사업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시·도의경우불요)	
		자체사업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 상환	채무상환
		예 비 비	
		기 타	예비비등
목	—	성질별 분류 : 39개목	

<과목구조 개편내역>

구 분	세 입		세 출	
	'96	'97	'96	'97
장	7	7	5	5
관	11	11	16	16
항	26	27	39	39
세 항			132	자율결정
세세항			16	11
목	71	84	35	36

라. 1998년도

'98년도의 세입·세출 과목구조는 '96년도부터 개선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97년도에 조직단위중심의 과목체계인 “세항”을 자율운영한데 이어 '98년도에는 “항”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자주성을 제고 시켰다.

그동안 예산편성에 있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보상금등』의 목을 세목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예산편성 내용분석을 용이하게 하였다.(1개 목, 29개 세목신설)

- 법정과목 : 장(기능별)·관(기능별)·항(조직별)·세항(조직별)·목(품목별)
- 행정과목(세세항·세목) : 법정과목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내용분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과목

보상금은 법령·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와 채권·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과목구분과 설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96년도까지는 동일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97년도부터 보상금 과목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목설정 내용중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경비”를 제외시켜 운영중이다.

<'97보상금 예산과목구분과 설정 내용>

- ① 법령·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리장 보상금,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등
- ② 채권·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 교육, 공청회, 각종행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등에 특별히 초청하여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 시·도립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 시·도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 각종 세미나운영시 참석자에 대한 사례금 등

보상금 예산운영실태를 보면 '97년도의 경우 '96년보다 21.7%가 증가하였으며 시·도는 8.0%가 감소, 시·군·구는 25.5% 증가하였다. 동기간중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증가율은 19.4%이다.

(단위 : 억원)

구 분	'95	'96		'97	
		예산액	전년대비(%)	예산액	전년대비(%)
계	11,753	11,675	△ 0.7	14,213	21.7
시 · 도	1,828	1,319	△ 27.8	1,214	△ 8.0
시·군·구	9,925	10,356	4.3	12,999	25.5

※ 당초 예산규모로 작성한 것임

'96. 12~'97. 2월중 감사원에서 실시한 경상경비 감사시 보상금에서 간담회비, 사례금, 기념품제작비, 위로금품 구입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집행한 내용이 적발되었다. 이와 같이 보상금운영의 부적성 사례가 빈발하여 보상금예산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일반보상금』과 『이주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일반보상금을 12개 세목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심성·행사성·낭비성 경비집행을 사전에 방지시켰다.

< 일반보상금 세목 신설내용 >

- | | |
|------------------|-------------|
| · 사회보장적 수혜금 | · 장학금 및 학자금 |
| · 의용소방대지원경비 | · 자율방범대원운영비 |
| ·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 · 입영장정지원비 |
| ·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 · 민간인해외여비 |
| ·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 민간실비보상금 |
| · 재해대책보상금 | · 기타보상금 |

격려·위문 등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경비, 사회단체보조금, 기념품구입비는 보상금비목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면서 국고보조금이나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제외시켰다.

< 과목구조 개편내역 >

구 분	세 입			세 출		
	'97	'98	증감	'97	'98	증감
장	7	7	-	5	5	-
관	11	11	-	16	16	-
항	27	29	⊕ 2	39	자율결정	-
세 항	-	-		자율결정	자율결정	-
세세항	-	-		11	11	-
목	84	87	⊕ 3	39	40	⊕ 1
세 목	-	-	-	89	118	⊕ 29

89개 세목을 118개 세목(29개 세목 증가)으로 신설하였다.

보상금 12개, 포상금 5개, 배상금 3개, 연구개발비 3개 등 명칭변경된 세목은 다음과 같다.

- 201-12 기타운영비 ⇒ 의료비로 변경
- 207-02 업무추진교통비 ⇒ 교통비로 변경
- 405-01 자산취득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 405-02 물품 및 도서구입비 ⇒ 도서구입비로 변경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하던 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통합시켰다.

마. 1999년도

세분화되어 있는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제고시켰다

세세항 : 11 → 8개세세항(3개 세세항 축소)

목 : 40 → 36개비목 (4개 비목 축소)

세 목 : 118 → 78개비목 (40개 비목 축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격려·위문·간담회·기념품 구입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회단체보조금 경비는 보상금 비목에서 집행금지 시키고 선심성 또는 사적용도 사용으로 감사원,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던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통합시켰으며 다른 비목과 유사하여 이중계상되거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관서당경비를 폐지하였다. 주요재정사업에 대해 『성과주의형』 예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조직별(과 또는 계단위)』로 편성하고 있는 세항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현 행 >

○○과관리
· 경 상 예 산
· 사 업 예 산

⇒

< 개 선 >

○○ 사 업
· 경 상 예 산
· 사 업 예 산

현행은 조직별 분류로 되어있어 결산시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 과목구조 개편내역 >

구 분	세 입			세 출		
	'98	'99	증감	'98	'99	증감
장	7	7	-	5	5	-
관	11	10	⊖1	16	16	-
항	28	27	⊖1	자율결정	자율결정	-
세 항	-	-	-	자율결정	자율결정	-
세세항	-	-	-	11	8	⊖ 3
목	87	85	⊖2	40	36	⊖ 4
세 목	-	-	-	118	78	⊖40

<세출과목구조>

장 · 관	—	기능별 분류 : 5개장 16개관
항	—	행정기관별 분류 : 자율설정
세 항	—	사업목적별 분류 : 자율설정
세세항	□	대분류(4) :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소분류(8) : 인 건 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 상환 채무상환 예 비 비 예비비등 기 타
목	—	성질별 분류 : 36개목
세 목	—	내용별 분류 : 78개세목

바. 2000년도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은 예산제도의 근간으로서 예산관련 통계의 작성과 『지방재정 분석』 등 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데 기초가 되는 바, '98년도 및 '99년도 예산과목구분과 설정 시달시 문제가 있는 과목을 대부분 보완개선 조치하였으므로 『2000년도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은 연도간 예산분석이 용이하도록 '99년도의 과목구조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세출예산과목중 과목설정내용이 명확치 못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제기되었던 일부비목에 대하여 설정내용을 보완하였다.

지방세의 개편, 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의 변경에 따른 세입과목의 신설로써 자동차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주행세로 지방세원화 함에 따라 『주행세』 목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 도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목을 신설하였다.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지방비부담을 위한 세출과목 신설하였는바,

향도예비군설치법시행령('99. 6. 30)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세목신설하고 설계비·보상비와 함께 시설비 세목(401-01)에 포함되어 있던 『감리비』를 세목으로 독립시켰다.

과목설정내용의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용인부임(101-04) : 의료보험부담금 편성근거설정

일반운영비(201) : 공모지방채발행 제경비,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납부 근거설정

일시사역인부임(206-02) : 부상치료비 편성 근거설정

의료 및 구료비(307-01) : 치료비 및 시약대 근거설정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307-02) : 정책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음을 명기

시설비(401-01) : 방치폐선처리비, 대체농지조성비 편성 근거설정

사. 2001년도

예산과목은 2000년도까지 운영해오던 과목구조체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재정환경의 변화로 의장단협의체 등 구성에 따른 세출과목을 과목구조에 반영시키고 예산의 통제관리에 있어 중복공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중복예산과목의 세목을 분리하였으며 특히 예산과목 설정내용 중 경비의 성격에 대한 설명의 구체화로 경비집행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과목설정내용의 조정·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입과목신설 : 주행세(111-12), 재정보전금(521-01)

- 세출과목 신설 : 의장단협의채부담금(205-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06),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4)
- 세출과목 분리
 - 차입금이자(311)를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이자(311-01)와 기타차입금상환이자(311-02)로 분리
 - 자치단체대행사업비(403-02)를 자치단체대행사업비(403-02)와 공공기관등에대행사업비(403-03)으로 분리
 - 예수금원리금상환(704)을 예수금원금상환(704-01)과 예수금이자상환(704-02)으로 분리
 - 반환금(802-01)을 국고보조금반환금(802-01)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802-02)으로 분리
- 과목설정 보완
 - 일용인부임(101-04) :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삭감
 - 일반운영비(201)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예산편성
 -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보험료 집행실적 등 감안 적정한 예산편성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재료비(206) : 피복비, 관계법령에 근거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추가
 - 재해보상금(302-02) :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추가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5)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추가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702) : 교육정보화지원사업 경비부담 추가

Ⅲ. 세출예산 과목구분의 분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2001 세출과목 분류체계 >

구 분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내 용	기능별 분류		행정조직별 분 류	조직 또는 사업 목적별 분류	경비유형별 분 류	성질별 분 류
분류수	5	16	자율설정	자율설정	대분류4 소분류8	36 (세목88)

기능별 분류는 국가정책 목적별 분류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장)		(관)
○ 일반행정비	⇒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
○ 사회개발비	⇒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 경제개발비	⇒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 민 방 위 비	⇒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 지원 및 기타경비	⇒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부금, 예비비

경비유형별 분류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기 위한 분류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대분류(4) :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 소분류(8) :	인 건 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지방채상환	채무상환
	채무부담행위 상환	
	예 비 비	예비비등
	기 타	

성질별 분류는 경비의 사용되는 용도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목(36)	세 목(88)
1. 인 건 비	1. 인 건 비	1.기본급, 2.수당, 3.기타직보수, 4.일용인부임
2. 물 건 비	2.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택비, 공무원에 대상으로한 의료비)
	3. 여 비	5.국내여비, 6.월액여비, 7.국외여비, 8.외빈초청여비
	4. 업무추진비	9.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기타업무추진비(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6. 의 회 비	13.의정활동비, 14.회의수당, 15.국내여비, 16.해외여비, 17.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8.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의장단협의채부담금
	7. 재 료 비	20.재료비, 21.일시사역인부임
	8. 연구개발비	22.학술용역비, 23.전산개발비, 24.시험연구비
	9. 일반보상금	25.사회보장적수혜금, 26.장학금및학자금, 27.의용소방대지원 경비, 28.자율방범대원운영비, 29.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30.입영장정지원비, 31.민간인 해외여비, 32.공익근무요원보상금, 33.민간실비보상금, 34.기타보상금
3. 이 전 경 비	10. 이주및재해보상금	35.이주보상금, 36.재해보상금
	11. 포 상 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학자금)
	12. 연금부담금	37.연금부담금, 38.의료보험금, 39.의원상해부담금
	13. 배 상금 등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등)
	14. 출 연 금	40.자치단체출연금, 41.기타출연금
	15. 민 간 이 전	42.의료및구료비, 43.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44.민간위탁금, 45.보험금, 46.연금지급금, 47.이차보전금
	16. 자치단체등이전	48.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자치단체교부금, 50.자치단체부담금, 51.자치단체간이전, 52.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53.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구 분	목	세 목
	17. 공 기 업 경 상 전 출 금	(기금출연금, 회전기금)
	18. 해 외 이 전	54. 해외경상이전, 55. 국제부담금
	19. 차 입 금 이 자	56.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이자, 57. 기타차입금상환이자
4. 자본지출	20. 시 설 비 및 부 대 비	58. 시설비, 59. 감리비, 60. 시설부대비
	21. 민간자본이전	61. 민간자본보조, 62. 민간대행사업비
	22. 자 치 단 체 등 자 본 이 전	63. 자치단체자본보조, 64. 자치단체대행사업비 65.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 66.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23. 공 기 업 자 본 전 출 금	(기금출연금, 회전기금)
	24. 자 산 취 득 비	67. 자산및물품취득비, 68. 도서구입비
	25. 기타자본이전	(차관물자용역대, 건설가계정, 무형고정자산)
	26. 해외자본이전	(해외교포 외국기관 지급자본 형성보조금)
5. 융자및출자	27. 융 자 금	69. 민간융자금, 70. 지방자치단체에대한융자금, 71. 지방자치단체에대한대부금, 72. 기업회계등융자금, 73. 통화금융기관융자금
	28. 출 자 금	(각종 출자금)
6. 보 전 재 원	29. 차 입 금 원 금	74.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 75. 예금은행차입금상환, 76. 기타국내차입금상환, 77. 차관상환, 78. 기타해외채무상환
7. 내 부 거 래	30. 기 타 회 계 전 출 금	(회계상호간전출금)
	31.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전 출 금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전출금 등)
	32. 예 탁 금	(계정간의 예탁·융자금)
	33.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79. 예수금원금상환, 80. 예수금이자상환
	34. 기타내부거래	81. 감가상각비, 82. 당기순이익, 83. 적립금
8. 예비비기타	35. 예 비 비	(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36. 반 환 금 기 타	84. 국고보조금반환금, 85.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6. 과오납금등, 87. 잡손금, 88. 조상충용충당금

『목』과 『세목』의 분류방법으로서 목내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은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다. 세목은 법정과목이 아니므로 상호 융통하는 것이며 전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목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을 보면 예산을 타목으로 줄 수 없는 세목은 인건비, 시설비등(동일사업의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 제외), 상환원리금(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음)과 예산을 타목에서 받을 수 없는 세목은 업무추진비가 있다

IV. 예산과목구분과 설정내용 및 주요 질의회신사례

1. 인건비

가. 인건비설정내용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사업소별로 『세항』을 정하여 일괄 계상하되 기본급·수당·기타직보수·일용인부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용인부임에는 환경미화원과 기타 상용인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미화원
 -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상용인부 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회 시달하는 임금에 의해 편성(처우개선사항은 매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회 별도시달)
- 기타 상용인부
 - 지방자치단체가 300일이상 연중 상시 고용하는 인부
 - 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통계기관이 공포한 노임단가의 범위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를 고려하여 적용
 - 일용인부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퇴직전환금과 부상치료비
 - 현업부서 일용인부의 피복비

- 일용인부의 여비 및 급량비

①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관련

【질 의】

- ①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정규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근무일수의 개념(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포함여부)
- ②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반일근무(4시간 기준)시 휴일근무수당과 기본급을 반일만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③ 복리후생비인 급량비(조식대)를 정규 출퇴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④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환경미화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인부임을 지급조건으로 고용한 일용인부로서 제반 인부임의 지급과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의 경우 지역간 균형유지와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부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질의①과 관련하여
 -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근무여부와 관계없이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1인당 시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일수라 함은 결근, 휴가, 공휴일 등 근무하지 아니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의②와 관련하여
 -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휴일날 특별히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급의 지급과는 별개의 사항이며, 반일근무의 경우 지급 가능여부는 관할노동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③과 관련하여

-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조식대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질의④와 관련하여

- 환경미화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원은 기본급의 예산편성기준일이 365일로 되어 있어 기본급에서 확보가 가능합니다.(재정 13310-630, 2000. 5. 18)

【 질 의 】

- ①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 여부
- ② 지침서상의 “일용인부의 여비 및 급량비” 미지급 사유
- ③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경우 제조부문과 공사부문의 단가 중 적절한 적용기준
- ④ 상용인부의 정수 관련사항

회 신

○ 질의 ①과 관련하여

- 일용인부임의 인부임 지급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거 우리부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 기타상용인부에 대하여는 직무의 성격, 내용, 기술자격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조합원의 인부임 문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 질의 ②, ③, ④번과 관련하여

- 일용인부의 여비 및 급량비의 지급, 임금기준에 있어 제조부문 또는 공사부문의 적용 결정, 상용인부의 정수책정 관련사항 등은
- 고용한 자치단체장이 고용계약 등을 통해 결정·운영해야 할 사항으로, 당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재정 13310-792, 2000. 6. 23)

【질 의】

- ①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에 있어 자치단체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98 예산편성기준에 없는 위험수당, 노조위원장활동비를 예산에 편성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원은 환경미화원인부임과 다르게 일용인부임 노임단가를 적용지급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재활용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수당,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질의①에 대하여
 - 환경미화원은 전국적으로 고용·운영되고 있어 자치단체간 균형있는 임금수준 유지가 필요하므로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를 거쳐 매년 예산편성지침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을 시달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동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인부임을 지급해야 할 것임
- 질의②에 대하여
 -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수거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우리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구체적인 임금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단체가 통계기관공포 노임단가와 근로기준법령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범위내에서 고용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음.(재경 13310-438, '98. 8. 18)

②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지급**【질 의】**

- ① 『환경미화원 인부임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은 월 2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의 근무실정 및 사역 환경에 따라 증액편성 가능 여부
- ②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관련법 규정상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회 신

- 질의①과 관련하여
 - 『환경미화원 인부임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휴일근무수당을 월 2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은 예산편성 산출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무형태나 사역환경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음
- 질의②와 관련하여
 -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55조에 의거 지급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재정 13310-1136, 2000. 9. 16)

【질 의】

- 환경미화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유급휴일에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는 것으로
- 우리부가 시달한 '99 환경미화원인부임예산편성기준에서는 연장근로시간 확인의 어려움을 감안, 실제 근무일수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2시간 시간외근무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 의】

- 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미화원 예산은 365일 기준(일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휴유급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주휴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 ② 만근한 경우에도 2일의 휴일근무수당만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③ 자발적으로 새벽4시부터 근무할 경우 04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무수당지급 가능 여부

회 신

- 『환경미화원 인부임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기본급(일당)은 365일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휴유급수당의 경우 365일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동 기준에 휴일근무수당은 월 2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관련 산출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휴일근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수당은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무시간 등 제반 복무조건을 결정하는 당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재정 13310-784, 2000. 6. 23)

【질 의】

- ① 『환경미화원 인부임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예산이 365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현재 365일을 모두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유급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주휴유급수당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과의 관계
- ② 휴일근무수당 관련하여 협의된 내용대로 만근을 하였을 경우에도 예산편성지침대로 월 2일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휴일에 근무한 날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③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주휴유급수당도 지급 여부
- ④ 조기출근으로 인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두 가지 중 어느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 ⑤ 오전 04:00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04:00~06:00까지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일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여부
- ⑥ 작업편의상 조를 편성하여 쉬는 경우에도 법정 공휴일과 같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평일에 쉬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신

- 질의①과 관련하여
 - 『환경미화원 인부임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기본급(일당)은 365일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휴유급수당의 경우 365일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②와 관련하여
 - 동 기준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월 2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관련 산출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휴일근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 질의③과 관련하여
 - 주휴유급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에 있어, 주휴유급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근무수당은 휴일날 특별히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호 연관성이 없이 별개로 운영되는 사항임
- 질의 ④, ⑤, ⑥과 관련하여
 - 조기출근으로 인한 수당지급, 작업편의상의 조편성 운영 등 구체적인 근무형태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계약 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질 의】

- ① 휴일날 실제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25,900원)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기본급(14,600)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②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에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시간외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③ 급량비(조식대)를 월 7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상출근(09:00)시에 도 조식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④ 기말수당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기본급을 몇 일 기준으로 정하는지

- ⑤ 근로기준법에 주 6일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환경미화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환경미화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을 지급조건으로 고용한 일용인부로써 일당 및 제반 근로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의 경우 자치단체의 요청과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우리부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시달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서의 휴일근무수당은 휴일날 직접 근무한 자에게 기본급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근무일수라 함은 결근, 휴가, 공휴일 등 근무하지 아니한 날은 지급대상에 제외되어야 합니다.
- 급량비(조식대)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시간 지나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로써 이는 귀 소속단체장과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며, 기타 기말수당,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인부임을 직접 지급하는 당해 단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재정 13310-538, 2000. 4. 20)

【질 의】

-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시간(22:00~06:00)중 일부시간 (03:00~06:00)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야간근로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회 신

-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수당지급은 야간근무가 본래의 근무이거나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 기본급의 5%를 가산하여 주는 것으로서
-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근무할 경우에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재정 13310-122, '99. 2. 5)

③ 환경관리대행업체소속 환경미화원 및 사무직원의 수당지급

【질 의】

- 자치단체로부터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환경관리대행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있어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한다는 내용의 의미는
 - ② 사무직원에게도 특수업무수당 및 월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여부는

회 신

- 우리부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는 것이며
- 청소위탁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당해 자치단체와 도급업체간 도급계약 내용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재경 13310-556, '99. 5. 3)

【질 의】

- △△시로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5개 환경위생업체 대표들이 미화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행자부가 시달한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축소지급하고 있으니 시정조치 요망

회 신

- 우리부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는 것이며
- 귀하께서 질의한 청소위탁 도급업체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기준은 당해 자치단체와 도급업체간 도급계약 내용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재경 13310-447, '99. 5. 7)

【질 의】

- 행정자치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간의 협상안은 자치단체소속 미화원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청소도급업체 소속 미화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 우리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의 임금협상은 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에 해당되며
- 귀하께서 질의한 청소도급계약은 당해 자치단체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재정 13310-549, '98. 4. 30)

④ 〰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지급관련**【질 의】**

-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지급대상자는 1년 초과 계속근무자(30등급까지)라고 하였던 바
 - 수당지급시 13개월부터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25개월부터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우리부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서의 근속가산금 지급은 1년을 초과근무한 자로서 13개월부터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재정 13310-365, 2000. 3. 22)

【질 의】

- '93. 1. 1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기간부터 근속가산금을 받고 있으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 선별원(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 신

-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속가산금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시기부터 적용되므로, 환경미화원이 아닌 다른 분야에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재경 13310-103, '98. 7. 8)

⑤ 환경미화원 퇴직금 계산방법

【질 의】

-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산정시 5년이상 재직자의 경우 재직년수에 군복무기간을 합산하여 1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산율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 8년근속자의 경우 근속년수(8년)에 대해 150/100의 비율을 적용하는지
 - 5년까지는 5년미만 근속자와 같이 산출하고 5년을 초과하는 3년에 대해서만 150/100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 환경미화원인부임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산출방법에 의하면 '99년도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의 경우, 5년미만 재직자는 월평균보수에 재직기간(군복무기간 미포함)을 곱하여 산출하고, 5년이상 재직자에 대하여는 월평균보수에 총재직기간(군복무기간 가산방법은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1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환경미화원인부임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인 귀사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과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 임금기준과 퇴직금 산출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13310-327, 2000. 3. 14)

⑥ 쓰레기적환장 근로자의 인부임 지급

【질 의】

- ① 쓰레기적환장 근로자도 환경미화원과 똑같이 쓰레기를 분리선별,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② 일용인부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장려수당을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질의①에 대하여

-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토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인부임을 지급조건으로 고용한 일용인부로서 인부임의 지급 및 제반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 인부임의 적용에 있어 동일업무 종사 인부임의 전국적인 균형유지와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거 우리부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마련, 이를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환경미화원 이외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인부임의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쓰레기적환장 근로자들의 근로내용이 노동의 질이나 난이성 등에 있어 여타 환경미화원과 유사한지 여부, 기타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귀 적환장근로자를 고용한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 지급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니 귀하를 고용한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②에 대하여

- 일용인부의 경우 정규직공무원과 같이 장려수당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인부 고용시 자치단체장과 고용인부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동의 질과 난이성 등을 감안, 인부임 이외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2. 물건비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분류할 수 있다

가. 업무추진비 설정내용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써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 직급보조비는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성격으로서 대민활동비와 감사·세무·예산·법무활동비는 병급지급이 가능하다.

1) 업무추진비의 개념·집행방법

【질 의】

- 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용어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열거된 용어인 지 여부

- ②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금액이 순소모성경비로 집행한 바 있는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중복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통합한 근거
- ④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중복하여 용어를 운영하게 된 사유

회 신

○ 먼저 회신에 앞서

-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대별되고 있으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단위로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청장·보조기관·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직위별로 편성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비의 자치단체간 균형유지와 예산의 낭비억제를 위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기준액(상한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별로 동기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①에 대하여

- 상기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98년까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질의②에 대하여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목적이 자치단체의 행사·시책·대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과 조직운영 및 유관기관의 협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 설령 두 가지 업무추진비가 일부 접대비 등 소모성경비로 집행되었다 하여도 경비집행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

며 다만, 동일한 경비지출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이중으로 중복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 질의③에 대하여

-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통합한 것은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로 통합하여 제시한 기준액의 경비를 별도로 구분 운영함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번잡함을 개선하고 경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와 같은 사항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질의④에 대하여

-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온 것은 종전의 경우('93년이전)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일반업무추진비는 관공비라는 명칭으로 구분 운영되어 온 데 따른 것으로
- 두 가지 경비의 경우 공통적으로 회계의 집행절차에 의거 지출하되 특수활동비의 경우 불우시설 위로·격려 등 용도에 따라 현금지출이 가능한 점이 일반업무추진비와 다른 점입니다만
- '99년도부터 특수활동비를 일반업무추진비로 통합함에 따라 '98년까지는 특수활동비의 50% 수준이었으나 통합이후 '99년부터는 현금집행가능비율을 30%로 낮추어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음.(재정 13310-1127, 2000. 9. 14)

② 직급보조비 지급관련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지방자치단체(자매결연)와 통상 관련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파견근무) 제1항에 의거 외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직급보조비를 병급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하여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해외연수 및 외국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직무수행의 연속으로 보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임

③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관련**【질 의】**

- 2개소의 공영빔물펌프장에서 검임근무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월정액 7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98 예산 편성기본지침상의 월정액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편성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공무원 개인에게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며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과 금액은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임의로 지급할 수 없음(재경 13310-45, '98. 1. 19)

【질 의】

- 1과 1계에서 담당하던 투자심사·중기재정계획·지방채·기금관리업무를 2과2계로 조직이 개편되었을 때 시·도의 지급대상과 같이 2과2계 직원을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으로 인정하여 과장 및 계직원에게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법무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므로
- 연도중 기구·직제의 변경으로 소속과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업무와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함(재경 13310-206, '97. 3. 21)

【질 의】

-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시·도의 예산 및 투자관리(심사) 업무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대상 범위를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단위』로 정하고 있는바
-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였던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업무를 조직개편으로 기획관실의 투자심사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 기획관실 공무원중 투자심사업무를 담당(투자심사계)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범위를 『실과단위』로 정한 것은 경비지급범위를 최소화하고 동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간 경비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예산 및 투자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예산담당관실 등)가 아닌 다른 실과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일부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종전에 예산담당실과에 소속되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받아 오다가 직제의 변경으로 일부계가 다른 실과에 소속되어 동일업무를 수행할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계속적인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재경 13310-593, '98. 9. 26)

【질 의】

- 『재산관리계』 소속 직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재산관리 업무담당 공무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근무직원에게 지급토록 한 것이므로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재경 13310-742, '98. 11. 6)

【질 의】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세무부서에 대하여는 대민활동비 외 별도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세외수입인 주차장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세무부서 담당공무원과 같이 별도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P6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질 의】

- 6급이 5급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경우, 직책급여무추진비를 5급과장이 받는 금액으로 지급하였고 대민업무활동비는 미지급하였음.
- 직무대리이므로 직책급여무추진비는 5급기준 지급, 대민업무 활동비는 6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은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6급으로 5급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함.

【질 의】

- 출산휴가중인자의 대민활동비(6급이하, 월정액 30,000원) 지급 가능 여부
 - 세출집행지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월정직책급 집행지침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월정직책급은 1개월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회 신

- 대민활동비는 시·도 및 시·군·구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등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명목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 휴직(단, 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1개월이상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없음.

【질 의】

-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대민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 대민활동비는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근무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 등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명목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 휴직(단, 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1개월이상 직무를 직접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으나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는 지급대상임

【질 의】

- 대민활동비의 지급범위가 2/4분기부터 청원경찰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 근무하는 정수장감시 청원경찰의 경우 지급여부
- 우선 정수장 감시 청원경찰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읍면으로 재배정되어 지급, 청원경찰의 소속은 읍면에 정원이 있어 읍면수당 및 민원수당등은 지급받지 않는 실정이나 2000년 2/4분기부터 대민활동비 지급범위를 청원경찰을 포함하도록 되어 읍면소속 청원경찰도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감설) 지급범위가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원경찰이 읍면동의 소속일 경우 지급 불가

(을설) 지급범위가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은 기존의 지급자이고 청원경찰은 추가된 것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지급 가능

회 신

- 대민활동비는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과 전임계약직 6급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립보호직원이 지급 대상이며
- 읍면소속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읍면수당 및 민원수당 미지급 경우)도 지급 대상임.

【질 의】

- 시군구 근무 6급이하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월중에 들어가거나 휴가가 끝나 월중에 출근하는 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해당 월의 30,000원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월중에 출산휴가로 출근하지 않거나 출산휴가가 끝나 월중에 출근하게되는 경우 대민활동비 월정액 30,000원을 전액 지급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실근무일수(공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신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국가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4) 직책급여무추진비 지급관련

【질 의】

- 시청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는 경우 직책급여무추진비 지급 여부

회 신

- 직책급여무추진비는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 원칙상 직제에 의한 직위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직위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하부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직책급여무추진비의 지급여건을 고려, 급여를 지급한 ○○ 시청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13310-979, 2000. 8. 7)

【질 의】

- 공로연수과전자(전 부구청장·국장)에 대한 직책급여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와 교통비(연봉적용대상 제외) 지급가능여부

회 신

- 직책급여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공로연수과전자에 대해서는 직책급여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임

-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그 집행방법은 국가의 '99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있는바
 - 공로연수파견자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의 지급제외대상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지·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재경 13310-1082, '99. 10. 15)

【질 의】

- ○○시 직제규칙상의 고충민원분석관(4급상당 별정직), 정책보좌관(4급일반직) 등의 보좌기관에 대하여 직책급여무추진비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4급 보조기관의 경우 월 350천원(연간 4,200천원) 지급함
- 또한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직제상 보조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하부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음.

【질 의】

- 시립도서관 관장은 6급 기관장으로 월정직책급여무추진비는 100,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은 대민업무활동비 지급부서이기에 매월30,000원씩 대민업무활동비도 지급하고있음
- 지침상의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포함되어져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3목에서 직급보조비만 병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대민활동비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볼 수 있는지
 - 병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신

- 대민활동비는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명목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 6급 기관장으로 직책급여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함

【질 의】

- 행정자치부 발행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59~60p상 직책급여무추진비의 항목내용중 6급 보조기간 동사무장(서울시는 동의계장)이라고 되어 있음
- ○○시의 동사무소 업무체계는 이진같이 보조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위만 사무장에서 총괄담당으로 변경되었음
- 이 경우 직책급여무추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신

- 직책급여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바
- 동의 [총괄담당]은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60p)중 6급 보조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책급여무추진비의 지급대상이 아님

【질 의】

- ① 국가기관 보조기관의 경우 課長과 科長 구분없이(연구관 포함) 직책급여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②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경우 보조기관인 課長과 科長 보직을 받아 부서운영비는 동일하게 집행하는데, 연구관 과장(科長)은 직책급여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안되는지 여부
- ③ 課長과 科長(연구기관 과장)의 직책급여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차별성 여부

회 신

- 질의 ①②③에 대하여
 -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직책급여무추진비는 하부조직이 있는 기관장과 조직관 계법 또는 직제상 보조기관 課長이상을 대상으로 직위별 당해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하는 것인 바
 - 연구기관의 科長(5급상당)은 직책급여무추진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재정 13310-403, 2000. 3. 29)

나. 복리후생비 설정내용

복리후생비는 국가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항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의 경비이외에 별도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없다.

【질 의】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정무직공무원(1급상당이하 연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국가공무원과 같이 적용되는 경비로, 연가보상비 적용기준이 되는 세출예산집행지침의 내용에 따라 정무직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재정 13310-1054, 2000. 8. 28)

【질 의】

-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파견명령을 받아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지급대상자인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은

회 신

- ①항 질의에 대하여
 - 세출예산집행지침상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거 국내외훈련기관등에 장기(1개월이상) 파견된 공무원』에 해당됨. 단, 1회 교육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함
- ②항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frac{12\text{월}-제외기간(\text{월})}{12\text{월}}$
 - 1회 교육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 제외기간에 포함(참고 : 세출예산집행지침상의 연가보상비 내용 참조)(재정경제원 예기 4112-9, '98. 2. 3)

【질 의】

-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에 있어 연도중 지방자치단체에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98. 12. 26일자 ○ ○ 구 → ○ 구) 연가보상비 지급기관에 대한 질의

회 신

- '98 세출예산집행지침상 연가보상비 지급기관은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 봉급지급 기관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 '98. 12. 26일자 인사발령인 경우 현지근무(전입지)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이 타당함(재경 13310-123, '99. 2. 5)

【질 의】

- ○ ○ 도(○ ○ 군)에서 '98. 9. 30일자로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현년도 예산에서 그리고 채권소멸시효 전까지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갑설)
 -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

- 게 되어 있어 ○○군의 경우 퇴직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당
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군의 실무착오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지방재정법 제58조(과년도지출)의 규정에 의하여 현년도예산에 편성하여 퇴
직 유무에 상관없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며,
 -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내 지급
해야 한다는 설

(을설)

-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98~'99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과 설정(행정자치부)에서 예산과목이
복리후생비로 구분되고, 지급대상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자에게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설

회 신

- 귀 기관의 검토의견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경 13310-269, '99 3. 22)

【질 의】

- 지방행정 구조개편으로 통·폐합된 기구의 잉여인력을 대기발령 조치한바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아 일부 언론에서 대기발령된 공
무원들의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바,
- 세출예산집행지침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는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중에
있는 자만 지급제외 대상자로 되어있으나
- 대기중인 자는 사실상 직무에 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
급은 동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므로 동지침의 지급제외대상자 기준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건의

회 신

-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비목으로서 국가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준을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지급기준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운영현황을 보면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으며, 연가보상비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재경 13310-670, '98. 10. 10)

【질 의】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바,
- '99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설정 지침 p64 4. 명절휴가비 나. 지급대상일 및 지급액의 “단, 당해월중 승진·강임---하고,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감액되기전의 봉급액으로 함”의 지침내용을 보면 휴직자도 지급한다고 해석이 되는바
- 휴직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및 2)번 내용의 명확한 해석은

회 신

- 명절휴가비는 지급대상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명절휴가비가 지급대상일 현재 월봉급액의 50%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한 것임

【질 의】

- 가계지원비가 4,5,8,10,11월로 지급일이 변경되었는데, 무조건 그 달 보수액의 50%인지, 아니면, 합산하는 달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회 신

- 가계지원비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청원경찰중 지급월 현재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 지급방법은 지급월(4,5,8,10,11월)의 월봉급액(지급월 현재의 실 지급한(할) 봉급액을 의미함)에 50%를 곱하여 계산하며,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 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이번 호에는 인건비와 물건비만 언급하고 다음 호에는 물건비의 미진한 부분과 이전 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예비비 기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